

사전 자문 의견서

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'임대료 연체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연구'와 관련하여 과업범위의 적절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자문사항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임대료 연체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의 본 과업은 ① 해외 지원사례 조사 ② 국내 지원정책 및 관련사례 조사 ③ SH 연체세대 관리현황 및 절차 조사를 통해 ④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해 ⑤ 정책개선(안)을 마련하도록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설정한 것은, 실효적인 정책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됨

연체세대 관리현황 FGI 실시 및 사례조사에서, 관리 체계 분석을 위한 FGI 뿐만 아니라 연체 세대에 대한 FGI도 실시를 통해, 주요 연체 사유를 분석으로 초기 연체가 장기연체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. 초기 연체 시 상담 및 지원 등 제도적 개입이 장기 연체를 예방해 체납 비율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효과적임

해외 정책 사례조사 시,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한 예산 등도 검토 필요 (미국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예산을 편성해, 지원서비스, 주민참여지원 뿐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해야할 임대료와 지방 주택청 책정 임대료 사이의 차이(GAP)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공공주택 운영기금을 통해 보전함)

2019. 12. 18

자문위원

소 속 :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

성 명 : 이원호

(서명 또는 인)



보안각서

(자문위원용)

본인은 2019년 월 일 귀 公社에서 요청한 자문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.

1. 본인은 본 자문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.
2.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2019년 12월 18일

소속 : 한국도시연구소

직위 : 책임연구원

성명 : 이원호 (인)



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

연구용역 사전 자문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'임대료 연체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연구' 전문가 사전 자문
 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 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성 명 : 이원호
- 소 속 : 한국도시연구소
- 주민등록번호 : 7605174-1329217
- 연 락 처 : 010-4258-0614
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 : 우리은행
 - 계좌번호 : 1002-051-247590
 - 예 금 주 : 이원호
- 사회자 수당 지급내역

| 구 분 | 지급액 | 과세표준 | 세금지급액 | | | 차인지급액 | 비고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| | | 소득세 | 주민세 | 계 | | |
| 자문수당 | 137,500 | 55,000 | 11,000 | 1,100 | 12,100 | 125,400 | (단위:원) |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9년 12 월 18 일

자문위원 : 이원호

 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